

2026년 제1회(재공고) · 제2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2026년 제1회(재공고) · 제2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2월 4일

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

| 채용분야 | 채용직급 (근무시간) | 채용 인원 | 계약 기간 | 담 당 직 무 |
|---|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진 료 의 사 (주24시간 근무) <i>*제2회</i>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(주24시간) <월~수 근무> | 1명 | 1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월 ~ 수 09:00 ~ 18:00 근무 ○ 환자 진료업무(감염병 등) ○ 결핵 진단 및 환자 치료, 관리 ○ 건강진단서·건강진단결과서 발급(흉부 X-선 판독)에 관한 사항 ○ 신종감염병 및 재난, 응급의료 등에 관한 의사 업무 ○ 예방접종 예진에 관한 사항 ○ 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|
| 진 료 의 사 (주16시간 근무) <i>*제2회</i>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(주16시간) <목~금 근무> | 1명 | 1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목 ~ 금 09:00 ~ 18:00 근무 ○ 환자 진료업무(감염병 등) ○ 결핵 진단 및 환자 치료, 관리 ○ 건강진단서·건강진단결과서 발급(흉부 X-선 판독)에 관한 사항 ○ 신종감염병 및 재난, 응급의료 등에 관한 의사 업무 ○ 예방접종 예진에 관한 사항 ○ 환자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|
| 사 업 용 차 량 불 법 행 위 단 속 <i>*제1회(재공고)</i>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35시간) | 1명 | 2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현장단속 및 계도 ○ 단속자료 정리 및 관할 자치단체 이첩 ○ 기타 사업용자동차 행정지도 ○ 단속활동 보고서 작성 및 관련 지시사항 수행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|
| 불 법 주 정 차 단 속 <i>*제2회</i> |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(주35시간) | 1명 | 2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불법주정차 단속·계도 및 행정지도 ○ 조간·주간·야간 순환근무 ○ 견인 필요 대상차량 견인 지시 ○ 불법주정차 단속(과태료 부과) 민원처리 ○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 행정처리(근무일지 작성 등) ○ 교통복지과 행정 및 현장업무 협조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 |

※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-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

3. 응시자격

○ 기본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▶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▶ 주소지 · 성별제한 없음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〉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〉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채용분야 세부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▶ 아래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자

| 채용분야·직급 | 자 격 기 준 |
|--|---|
| <p>진료의사 <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>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(주24시간 근무)</p> | <p>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이 있는 사람</p> <p>< 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 경력 <p>< 우대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▶ 영상의학(흉부X-선) 판독 유경력자 |
| <p>진료의사 <동안구보건소 보건정책과>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(주16시간 근무)</p> | <p>○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면허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이 있는 사람</p> <p><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분야 근무 경력 <p>< 우대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▶ 영상의학(흉부X-선) 판독 유경력자 |
| <p>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 <대중교통과>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</p> | <p>○ 필수요건³⁾을 모두 충족하며,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이 있는 사람</p> <p>< 필수요건³⁾ > (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 5일, 일 7시간 2교대 근무(주간 : 07시~15시, 야간 : 22시~05시) 가능한 사람 ▶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야간운전이 능숙하여 현장업무 가능한 사람 ▶ 주야간·주말·공휴일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연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<p><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교통 및 건축, 광고물 등 일반단속업무 또는 교통 관련 행정업무 경력 <p>※ 우대사항 : 컴퓨터로 한글 및 엑셀의 활용이 능숙한 사람</p> |

| 채용분야·직급 | 자 격 기 준 |
|--|--|
| 불법주정차 단속 〈만안구 교통녹지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| <p>○ 필수요건⁵⁾을 모두 충족하며,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⁶⁾이 있는 사람</p> <p>〈 필수요건⁵⁾ 〉 (아래 두 가지 모두 충족하여야 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이 능숙하여 현장 단속 및 현장 민원 대응이 가능한 사람 ▶ 2교대 및 야간(휴일 포함) 근무, 상황발생 시 연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사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근무시간 : 주 5일제, 1일 7시간 2교대 근무(주말 및 공휴일 포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간 : 08:00 ~ 16:00 - 주간 : 09:00 ~ 17:00 - 야간 : 14:00 ~ 21:00 ※ 근무방법 및 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<p>〈 관련분야 실무경력⁶⁾ 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 등에서 단속, 상담, 민원처리분야 또는 교통관련 행정업무 경력 <p>【우대사항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교통관련 단속업무 경력자 ▶ 한글문서, 엑셀, 사진전송 등 컴퓨터 활용이 능숙한 사람 |

관련분야 실무경력 관련 유의사항

-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**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**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
-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**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.**
-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,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할 계산됨.
-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에 따라 **일반(시간선택제)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.**

4. 시험방법

- 1차 시험(서류전형) :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(학력, 경력요건 등) 심사
 - ⇒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담당 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,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심사하여 합격자 결정
 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4항)
- 2차 시험(면접시험) :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에 한함
 - ⇒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 - ※ **추가합격자 결정**
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5.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

- 접수기간 : 2026. 2. 19.(목) ~ 2. 23.(월) < 3일간 >
- 접 수 처 : 안양시청 총무과(3층) 인사팀
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▶ 방문접수
 - 접수시간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 - ※ **접수 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**
 - 응시원서 제출 前 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
 - ※ 응시수수료 :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[가급: 1만원, 마급: 5천원]
 - ※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해당되는 경우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 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증명서 지참 필요)
 - 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증명서 지참 필요)
 - 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(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필요)
 - 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)
 -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만 해당)
 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
▶ 등기우편 접수

- 우편주소 : 우)14053 /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,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
 - ※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 - 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
- 우편봉투 겉면에 '2026년 제00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원서' 표기
-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
 - ※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-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누락·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가능. 접수마감일 이후 우편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

○ 시험일정 : 안양시 홈페이지 (www.anyang.go.kr) 공고

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|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| | 최종합격자 발 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| 일 시 | 장 소 | |
| 2026. 2. 27(금) 전·후 | 2026. 3. 4(수)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| 2026. 3. 6(금) 전·후 |

- ※ 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,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'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' 공고문을 통해 확인 요망
- ※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청 홈페이지(www.anyang.go.kr) 고시/공고란(채용공고)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

6. 제출서류 ※ 원서접수 시 스테이플러, 띠지 등 사용 금지

○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1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▶ 응시수수료 :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

※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[가급: 1만원, 마급: 5천원]

-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2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-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3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-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4호) ※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 제출 제외
-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(별지서식 5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-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(별지서식 6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, 자격요건 중복표시 가능)
-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
(별지서식 7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, 기관 자체서식 활용 가능하되 아래 내용 반드시 기재)

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

- ▶ 경력 ·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, 연락처를 필히 기재
- ▶ 제출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 [근무기간, 근무형태(전일·시간제), 직위(급),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]
- ▶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(ex.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근무경력 2년으로 인정)
-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▶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가능
- ▶ 폐업기관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서,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등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 추가 제출 가능
※ 증빙서류를 통해 관련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(미제출시 경력 불인정)

-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<http://www.nhis.or.kr>), 정부24(<http://www.gov.kr>)에서 출력 가능
- 학사(전문학사 포함)학위 이상 전체 졸업(재학)증명서 각 1부
 - ▶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모두 제출
 - ▶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-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※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(**해당자만 제출**)
 - ▶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.
-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(**해당자만 제출**)
 - ▶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
- 외국어능력,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 (**해당자만 제출**)
-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(**해당자만 제출**)
 - (별지서식 8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 ※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
-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(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) 1부
 - (별지서식 9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 - ※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
7. 보수수준 및 복무

- 보수수준 :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직급별 연봉하한액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13)을 원칙으로 함.

※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하한액의 120%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.

| 연번 | 임용예정분야 | 임용직급(근무시간) | 연봉하한액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 | 진료의사 |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(주24시간) | 41,798천원 |
| 2 | 진료의사 |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(주16시간) | 27,866천원 |
| 3 |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 |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주35시간) | 25,837천원 |
| 4 | 불법주정차 단속 |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주35시간) | 25,837천원 |

※ **진료의사의 경우 하한액의 120% 범위 내 연봉책정 가능**
 (주24시간 근무 50,157천원 / 주16시간 근무 33,438천원)

※ **연봉외 수당** : 가족수당, 시간외근무수당, 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 등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○ **복무사항** :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.

8. 기타사항

○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
○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○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하며,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○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○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서류의 누락·미비,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
▶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▶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
▶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.

○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해당분야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경력·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「공무원연금법」 제50조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합니다.
-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팀 (☎031-8045-2118)
 - 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| 채 용 분 야 | 부 서 명 | 전 화 번 호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진 료 의 사 | 동 안 구 보 건 소 보 건 정 책 과 | ☎ 031-8045-5937 |
| 사업용차량 불법행위 단속 | 대 중 교 통 과 | ☎ 031-8045-5559 |
| 불 법 주 정 차 단 속 | 만안구 교통녹지과 | ☎ 031-8045-3123 |